

# 2026년도 제3차 울산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모집 공고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울산인자위)는 「2026년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에 참여할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 6. 5.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위원장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Ulsan Regional Skills Council

가. 사업명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나. 관련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 등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52호(2025.12.29.) 2026년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운영기관 선정 결과 공고

다. 사업추진 배경

-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이 지역별 노동시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훈련과정이 적시에 운영될 필요성 증대
- 그러나,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중앙(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체계는 지역별 차별성 고려와 훈련공급시기 측면에서의 한계가 존재
-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시범 사업 운영을 거쳐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신설(고용노동부)
- 이를 통해,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대응하여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
- 국민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직무능력개발, 취·창업 및 이·전직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

라. 산업·직종의 정의

- AI 전환 대응 과정 :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AI 도구를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현업 실무자 양성 과정을 의미함
- 지원대상산업·직종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영 또는 고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해당 분야 종사자 등에게 직업훈련 지원 필요성이 시급하고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 및 직종 분야를 의미함
- 육성산업·직종 :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발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역 경제 성장 및 고용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인력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 및 직종 분야를 의미함

마. 실시 유효기간

- 승인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훈련기관에서 HRD-Net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가 인정 처리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

- 가. 공 모 명 : 2026년 제3차 울산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모집 공고
- 나. 공모 대상 : 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울산 관내 기관
- 다. 공모 분야 : 육성산업 · 직종, 지원대상산업 · 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 라. 접수 기간 : **2026. 6. 8.(월) ~ 6. 23.(화) 18:00까지**
- 마. 접수 방법 : E-Mail 제출(hrd@ucci.or.kr)
- ※접수 마감 이후 제출 불가능하며, 제출한 서류 수정 불가능**
- ※금번 공모부터 제본 제출 없음**
- 바. 공모 제출 서류 : (붙임3) 훈련기관 서약서  
(붙임4) 훈련기관 · 훈련과정 자료 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5) 사업계획서(양식) A권\_훈련기관명  
(붙임6) 사업계획서(양식) B권\_훈련기관명  
(붙임7) 훈련과정 일람표(양식)  
(붙임8) 수료증 양식 ※육성 해당 과정만
- 사. 사전 자료 제출 : **2026. 6. 16.(화) 17:00까지** ‘(붙임7) 훈련과정 일람표’  
작성하여 사전 제출

### 아. 공모 일정

훈련과정 공고	신청서 접수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선정발표
'26. 6. 5.	'26. 6. 8. ~ 6. 23.	'26. 7월 2주(예정)	'26. 7월 3주(예정)
울산인자위 홈페이지 등	E-mail 접수 (hrd@ucci.or.kr)	서면/대면심사	울산인자위 홈페이지 등

### 자. 공모 절차

훈련과정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울산인자위 사전검토 및 정량평가 / 중복성 검토(심평원)	훈련기관 소명서 제출 (해당기관)
울산고용센터, 전문위원	특별분과위원회	결과 공고 및 훈련과정 인정 신청	울산고용센터 과정 승인
서면 및 대면 심사 (정성평가)	심사결과 심의의결		

## 가. 신청 가능 과정 수 및 회차

구분	신청 가능한 훈련과정 수	신청 가능한 훈련 회차
육성산업·직종	최대 1개 과정	2회차
지원대상산업·직종	최대 3개 과정	일반과정 2회차 단기과정 3회차
비고	총 신청 과정은 3개를 초과할 수 없음. (25년도 우수훈련기관의 경우 1개 과정 추가 신청 가능. 단, 26년 공모 중 혜택 기적용기관은 제외)	

나. 운영 시기 : **27년 2월** 이내 실시 가능한 훈련 과정만 신청 가능

다. 과정명 : 훈련과정명 앞에는 반드시 (산대특)을 붙여 작성

ex) (산대특)000\_지원과정, (산대특)000\_육성과정

라. **육성산업·직종 훈련과정은 아래 항목 운영 必**

**- 수수료 발급**

- 훈련기관은 **수료생에게** 기관 명의의 **수수료 발급 필수**
- (필수 기재사항) 훈련생 성명, 생년월일,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획득한 직무 역량(Skill-set), 훈련기관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
- (첨부분서) 훈련과정 개요서, 포트폴리오 등 학습 결과물\*
- \* 훈련생이 수행한 포트폴리오 성과물 등에 대한 요약 정보(문서, 링크, QR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가능)

※ 첨부 ' [붙임8] 수수료 양식 ' 활용하여 작성 후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 우수 훈련사례 제출**

- 훈련기관은 승인된 훈련과정의 수수료 이후 우수 훈련사례(커리큘럼 및 결과) 1점 이상 제출 필수(추후 인자위에서 제출 요청 예정)

## 가. 육성 산업·직종

구분	직종설명	KSIC 소분류	NCS 소분류
제조업 AX	제조업 현장에 AI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운영, 생산공정 개선, 설비관리, 품질 향상 등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 분야의 직종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0102 기계설계 151103 스마트공장 운영 관리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200102 정보기술개발 200107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UAM)	친환경차 전환과 드론 산업 육성에 대응하여 전기·수소차 및 드론의 제작, 정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능·기술에 관한 직종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150602 자동차제작 150603 자동차정비 150901 항공기설계 150902 항공기제작 150903 항공기정비
친환경 선박 K-함정	친환경 선박 전환과 함정산업 발전에 대응하여 선박과 함정의 설계, 건조, 의장, 정비에 필요한 기능·기술에 관한 직종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50801 선박설계 150802 선체건조 150803 선박의장생산 150807 선박정비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충전인프라 등 에너지 전환 기반의 확대에 대응하여 전력 및 에너지의 생산·저장·공급·운영을 위한 설비와 시스템을 구축·관리·제어하는 기능·기술에 관한 직종	282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351 전기업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190103 송배선설비 190106 전기설비설계 감리 190108 전기자동제어 190112 전기저장장치 190113 미래형전기시스템 190114 전지 230505 재생에너지 230507 신에너지

## 나. 지원대상 산업·직종

구분	KSIC 소분류	NCS 소분류
공통직종	지원대상 산업·직종에 제시된 KSIC 소분류 중 선택하여 편성	020401 생산관리 050201 소방 050202 방재 160105 용접 230601 산업안전관리 230602 산업보건관리
석유화학	20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4대 주력산업은 NCS 직종 자유롭게 편성 가능
비철금속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자동차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조선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제조일반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통신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190103 송배전설비 190106 전기설비설계 감리 190108 전기자동제어
정비	34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40706 건설기계정비 150503 이륜차정비 150603 자동차정비
건설	411 건물 건설업 412 토목 건설업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2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140301 건축설계 감리 140302 건축시공
디지털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080201 디자인 080302 문화콘텐츠 제작 200102 정보기술개발 220101 출판
기타	841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020403 물류무역관리 070101 사회복지정책 070102 사회복지서비스

5

공모 참여 자격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면 참여 가능(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등 참고)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마.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 외 일반적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로의 신고 등을 거쳐야 함

6

훈련비 지원

가. AI 전환 대응 과정 :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 지원

육성산업·직종 :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 지원

지원대상산업·직종 :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00% 지원

나. ‘AI 전환 대응 과정’ 및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고급·특수 훈련 과정으로 추가 훈련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훈련비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 단가의 300%까지 지원(정산 필요)

※ 훈련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① ‘AI 전환 대응 과정’ 및 ‘육성산업·직종’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훈련과정으로 ‘훈련교·강사’, ‘훈련내용’, ‘훈련대상자’, ‘실습비’를 고려할 때 고급·특수과정에 해당할 것
- ② 또는 지역별산업별 수요를 고려할 때 정부승인훈련비(NCS 지원단가 130%)를 초과하는 훈련비를 지원받을 필요가 있어 고용노동부(본부 또는 관할센터)와 협의된 훈련과정일 것

< 고급·특수과정의 요건 >

연 번	요 건	세 부 내 용
①	훈련 교·강사	· 훈련교·강사 전공, 경력, 자격 등이 우수할 것(㉠ 해당 분야 관련 경력 10년 이상, ㉡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등)
②	훈련내용	· 난이도가 높은 훈련과정(Level 5 수준 이상)일 것 · 타 훈련기관에서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과정일 것
③	훈련 대상자	· (선행학습) 4년제 대학(유사 전공 포함) 전공자 또는 고급 및 특화 세부기준별 NCS 목표수준 미만의 능력단위 및 직무능력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일 것

		· (직무경력) 현장 경력 3년 이상 등 전문 인력 및 중간관리자, 관리자, 책임자 등일 것 · (자격증 등) 기사, 1급, 기술자 초급 등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자일 것
④	실습비	· 고가의 소모성 실습비가 많이 소요되는 과정일 것 ·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신 경향의 훈련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
※ 각 요건별 세부내용 중 한 개 이상 충족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 각 요건별 충족 여부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협조		
⇒ ①~④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할 경우 고급·특수과정으로 인정		

다.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00% 적용받는 훈련과정은 타 사업과 동일하게 주말 훈련에 따른 훈련비 120% 지원 적용(내배카 운영규정 제48조)

## 7 훈련 대상

가. 훈련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는 자  
나.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 훈련장려금

(훈련과정)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훈련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상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

구 분	140시간 미만	140시간 이상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20만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미지급	월 최대 20만원
EITC(근로장려금)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20만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미지급	일 최대 1만8천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월 최대 11만6천원	월 최대 20만원

⇒ 위 요건 충족 시, 훈련생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 지급(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단위기간 출석일수 × 1만원’ 방식으로 산정)

### ○ 특별훈련수당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훈련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훈련장려금과 더불어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급

(훈련과정) 개별 운영기관에서 선정한 AI 전환 대응 과정 또는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일 것

(훈련시간) 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일 것(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일것)

(훈련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상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

⇒ 위 요건 충족 시, 훈련생에게 매월 최대 20만원(비수도권)의 특별훈련

수당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단위기간 출석일수 × 1만원’ 방식으로 산정)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제한 가능

**다. 훈련생 자부담금 부과**

과정	자기부담금		차감액
단기(140시간 미만)	최대 10% (횟수 무관)		100만원까지
일반(140시간 이상)	1회	최대 10%	200만원까지
	2회부터	최대 55%	내배카 운영규정에 따라 부과

**○ 훈련비 구간에 따른 자기부담금 금액**

- 훈련참여자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하여 훈련비의 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아래 ‘훈련비 구간에 따른 자기부담금 금액’에 따름. 단, 계좌잔액이 남아 있어야 하며, 계좌한도에서는 200만원 이내에서 차감(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제46조의제3항)
- 다만, 원칙적으로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 과정에 한정하여 지원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바, 단기과정 수강 시,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지원횟수에 무관하게 아래 ‘훈련비 구간에 따른 자기부담금 금액’에 따름

**[훈련비 구간에 따른 자기부담금 금액]**

훈련비 구간	300 이하	3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800 이하	1,800 초과
자기부담금 금액	10%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 계좌유효기간 내 2회 이상 수강 시부터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에 따름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 '괄호( )'는 자비부담률

구 분	직종평균 취업률(3년 평균)				
	70% 이상	60% 이상 70% 미만	50% 이상 60% 미만	40% 이상 50% 미만	40% 미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92.5%(7.5%)	87.5%(12.5%)	82.5%(17.5%)	77.5%(22.5%)	72.5%(27.5%)
일반훈련생	85%(15%)	75%(25%)	65%(35%)	55%(45%)	45%(55%)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년·중장년층			70%(30%)	60%(40%)	50%(50%)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100%(없음)				80%(20%)

## 8

## 지원 제한 훈련과정 및 훈련직종

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5항에 의한 ‘인정제한분야’ 훈련과정  
 나. 단순 자격취득을 목적, 외국어 습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훈련과정  
 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하기의 10개 직종

연번	NCS 소분류	
	직종코드	직종명
1	020203	일반사무
2	020302	회계
3	060204	임상지원
4	120101	이·미용서비스
5	130101	음식조리
6	130102	식음료서비스
7	190107	전기공사
8	210201	제과·제빵·떡제조
9	140704	적재기계운전
10	140701	토공기계운전

라. 국기 훈련, KDT 및 일반직종 훈련 등 다수 훈련 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있는 훈련과정 등 타 훈련과 차별점이 없는 훈련과정 등

## 9

## 신청 무효 또는 참여 제한 사항

가.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2025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평가(훈련기관 인증평가, 과정심사)  
 결과 인증유예 및 조건부 승인기관, 심사 탈락한 부적합 과정을 재신청한 경우  
 다. 최근 1년 이내(공고일 기준)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지  
 시 또는 검찰 송치가 1건 이상 발생했을 경우  
 라. 공모에 제시되지 않은 ‘KSIC 및 NCS코드’ 훈련으로 신청한 경우  
 마. 그 밖에 본 공모의 취지와 맞지 않고 신청 무효, 참여 제한 훈련과정을  
 접수한 경우

가. 전화 : 052)228-3172, 3177

나. e-mail : [hrd@ucci.or.kr](mailto:hrd@ucci.or.kr)

※ 본 공모의 취지와 맞지 않고 신청 무효, 참여 제한 훈련과정을 접수한 경우 즉시 공모 탈락

<붙임자료>

- [붙임1] 2026년도 제3차 울산지역『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훈련공급기관 및  
훈련과정 공고문 1부
- [붙임2]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운영지침 1부
- [붙임3] 훈련기관 서약서 1부
- [붙임4] 훈련기관·훈련과정 자료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붙임5] 사업계획서(양식) A권 1부
- [붙임6] 사업계획서(양식) B권 1부
- [붙임7] 훈련과정 일람표(양식) 1부
- [붙임8] 수료증 양식 1부
- [붙임9]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 기준표 1부
- [붙임10] 심사채점표 1부. 끝.